

<붙임 1>

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

○ 의무사관후보생 포기 · 취소 가능 여부

-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*되면, 「병역법시행령」 제120조에 따라
의무사관후보생 취소 · 포기 불가 * 병적편입 : '26. 5. 1.

○ 제한연령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및 수련기관 퇴직(레지던트 미승급 포함)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현역장교(군의관),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

○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

-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
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,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

○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

-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
경우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입영하여야 함

2026. . .

병 무 청 장